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972호 2026. 3. 16.(월)

[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선 람	기관위원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8464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규 칙】**

제698호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

**【공 고】**

제2026-771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8

제2026-794호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 17



“규칙은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하“조례”라 한다)”를 “(이하 “조례”라 한다)”로, “제3호”를 “제4호”로, “(이하“재단”이라 한다)”를 “(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조 제5호”로, “(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학생의 자격은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기존 9등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선발은 직전 학기 평균 학점 C 학점 이

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 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라. 특기생 장학생 선발은 효행 및 기능·예능·체육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이·통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장학금을 신청한다.

3. 읍·면·동장은 제2호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 학년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4.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1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매 학년 개시 후 2/4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5. 장학생 선발인원은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범위로 한다.

6. 장학금 지원 인원은 이·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재단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8. 장학금 지급 도중 이·통장이 사퇴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선발기준  
(제2조제4항제4호와 관련)

1. 이·통장 경력: 장기 근속 이·통장 우대를 위해 근속연수 반영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3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2. 수혜 횟수: 특정 이·통장 수혜만이 아닌 공평한 기회 제공

수혜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점 수	50	45	40	35	30	25

- 직전년도 수혜자 감점(-10)

3. 통장 상훈: 시정발전 기여도 반영(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시장
점 수	10	9	8	7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 공고

공주시 석장리동 189번지 일원의 『석장리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주민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 공 주 시 장

### I.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1.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공원명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석장리세계 구석기공원	◦공원면적 : 22,151.0㎡ (변경없음)
	◦시설면적 : 12,233.5㎡ → 12,269.9㎡
	- 도로 : 2,534.3㎡ → 2,522.0㎡
	- 광장 : 2,911.1㎡ (변경없음)
	- 휴양시설 : 430.0㎡ (변경없음)
	- 교양시설 : 4,664.6㎡ (변경없음)
	- 편익시설 : 1,693.5㎡ → 1,742.2㎡
◦녹지면적 : 9,917.5㎡ → 9,881.1㎡	

2. **공원조성계획 변경사유**

- 주차장 및 주차장 연결로 변경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1 참조**

II.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석장리동 18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석장리세계구석기공원)사업
- 명칭 : 석장리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면 적(m <sup>2</sup> )	비 고
도시계획시설(공원)	22,151	
금회 실시계획인가	13,076	북측 공원부지에 한함

4. **사업시행자 성명 · 주소**

- 성명 : 공주시장(문화유산과장)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6. **공람기간 : 2026. 3. 16. ~ 2026. 3. 30. (14일간)**

7. **공람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문화유산과 석장리박물관팀,  
월송동 행정복지센터**

8.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6. 3. 30.
- 제출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6) 및 문화유산과(☎041-840-8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석장리세계 구석기공원	역사 공원	석장리동 112-2번지 일원	22,151	-	22,151	24.11.20.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 총괄표 】

구 분	부지면적(㎡)			공 작 물 (기)	건축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 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 계	22,151.0	-	22,151.0	27	1,059.7	1,059.7	100.0	100.0	시설률 : 55.2% → 55.4%		
세 부 시 설	소 계	12,233.5	증)36.4	12,269.9	27	1,059.7	1,059.7	55.2	55.4	※ 시설률 (법적기준) : 제한없음	
	기 반 시 설	도로	2,534.3	증)12.3	2,522.0	-	-	11.4	11.4		
		광장	2,911.1	-	2,911.1	-	-	13.1	13.1		
	휴양시설	430.0	-	430.0	-	-	2.0	2.0			
	교양시설	4,664.6	-	4,664.6	27	875.7	875.7	21.1	21.1		건폐율 : 4.78%
	편익시설	1,693.5	증)48.7	1,742.2	-	184.0	184.0	7.6	7.8		※ 건폐율 (지침기준) : 20.0%이내
녹지 및 기타	9,917.5	감)36.4	9,881.1	-	-	-	44.8	44.6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내용 및 사유

공원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석장리세계 구석기공원	◦시설면적 : 12,233.5㎡ → 12,269.9㎡	◦ 조성계획 변경 - 주차장 변경 - 주차장 연결로 변경 - 녹지 변경
	- 도로 : 2,534.3㎡ → 2,522.0㎡	
	- 광장 : 2,911.1㎡ (변경없음)	
	- 휴양시설 : 430.0㎡ (변경없음)	
	- 교양시설 : 4,664.6㎡ (변경없음)	
	- 편익시설 : 1,693.5㎡ → 1,742.2㎡	
	◦녹지면적 : 9,917.5㎡ → 9,881.1㎡	

다.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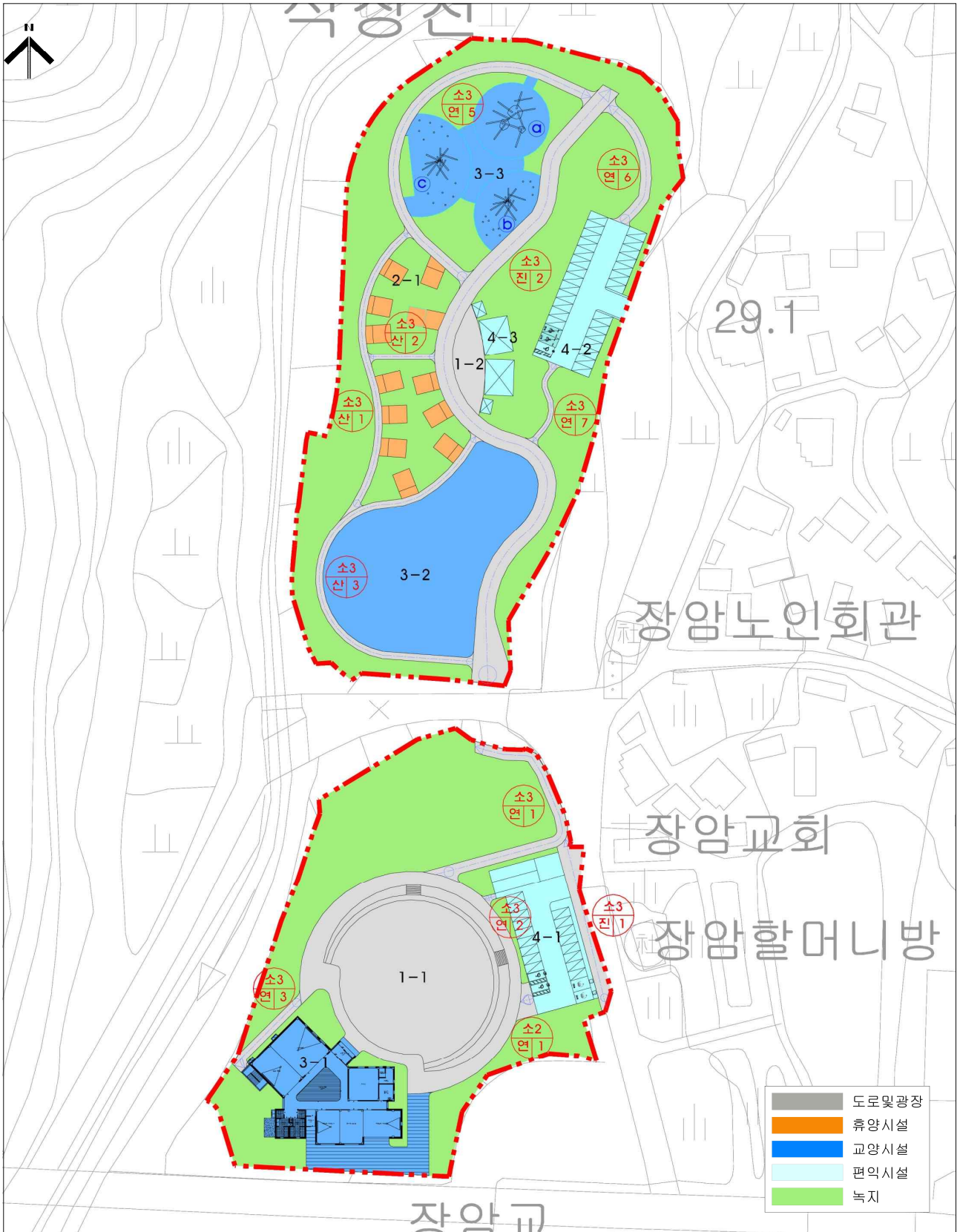
【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

시설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2,151.0	22,151.0	1,059.7	1,059.7	27	
시설부지 소계			12,233.5	12,269.9	1,059.7	1,059.7	27	55.2% →55.4%
도로 및 광장	소 계		5,445.4	5,433.1	-	-	-	
		도로	2,534.3	2,522.0	-	-	-	
	1-1	광장1	2,720.1	2,720.1	-	-	-	
	1-2	광장2	191.0	191.0	-	-	-	
휴양 시설	소 계		430.0	430.0	-	-	-	
	2-1	구석기체류형쉼터	430.0	430.0	-	-	-	
소 계			4,664.6	4,664.6	875.7	875.7	27	
교양 시설	3-1	구석기교육원	1,349.6	1,349.6	875.7	875.7	-	
	3-2	구석기숲	2,134.3	2,134.3	-	-	-	
	3-3	구석기놀이터	1,180.7	1,180.7	-	-	-	
	a	놀이시설1	-	-	-	-	1	
	b	놀이시설2	-	-	-	-	12	
	c	놀이시설3	-	-	-	-	14	
편익 시설	소 계		1,693.5	1,742.2	184.0	184.0	-	
	4-1	주차장1	758.8	758.8	-	-	-	
	4-2	주차장2	750.7	799.4	-	-	-	
	4-3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184.0	184.0	184.0	184.0	-	
녹지 및 기타부지 소계			9,917.5	9,881.1	-	-	-	44.8% →44.6%
녹지 및 기타	소 계		9,917.5	9,881.1	-	-	-	
	녹지		9,917.5	9,881.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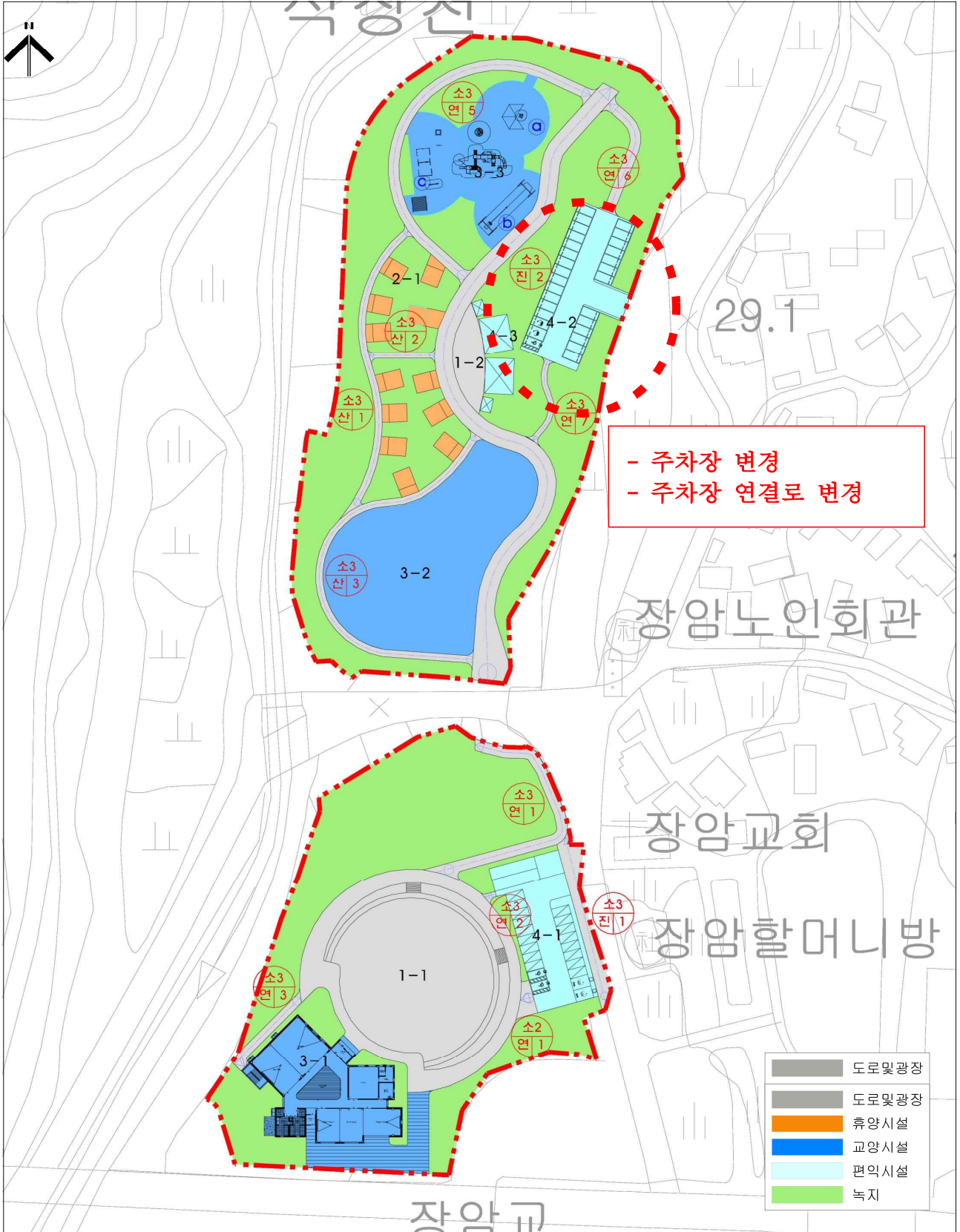
라. 동선계획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총 계					752.8	2,534.3			
변경						748.6	2,522.0			
기정	소로	3	1	2.8~7.3	진입로	47.4	183.8	구역계	연결로1	
기정	소로	3	2	5.0	진입로	201.1	1,066.4	구역계	연결로6	
기정	소로	3	1	3.0	연결로	76.5	234.0	광장1	구역계	
기정	소로	3	2	1.5	연결로	3.3	6.4	주차장1	광장1	
기정	소로	3	3	2.5~3.2	연결로	26.8	70.0	광장1	구석기 교육원	
기정	소로	2	1	9.3	연결로	3.8	36.9	주차장1	광장1	
기정	소로	3	5	3.0	연결로	111.0	336.8	진입로2	진입로2	
기정	소로	3	6	3.0	연결로	39.1	120.0	주차장2	진입로2	
변경	소로	3	6	3.0	연결로	34.8	107.9	주차장2	진입로2	
기정	소로	3	7	1.5	연결로	24.6	40.3	주차장2	진입로2	
변경	소로	3	7	1.5	연결로	24.7	40.1	주차장2	진입로2	
기정	소로	3	1	2.0	산책로	82.2	169.6	산책로3	연결로5	
기정	소로	3	2	1.5	산책로	18.3	29.5	진입로2	산책로1	
기정	소로	3	3	2.0	산책로	118.7	240.6	진입로2	진입로2	

【 공원조성계획도(기정) 】



【 공원조성계획도(변경) 】



붙임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405,438	13,076							
1	석장리동 170	답	279	279	-	공주시	100/100	-	-	-	
2	석장리동 187-1	답	1,412	1,412	-	공주시	100/100	-	-	-	
3	석장리동 187-2	답	1,087	1,087	-	공주시	100/100	-	-	-	
4	석장리동 188-1	전	572	545	-	공주시	100/100	-	-	-	
5	석장리동 188-2	전	559	559	-	공주시	100/100	-	-	-	
6	석장리동 189	답	1,759	1,759	-	공주시	100/100	-	-	-	
7	석장리동 190	답	159	159	-	공주시	100/100	-	-	-	
8	석장리동 191	답	208	208	-	공주시	100/100	-	-	-	
9	석장리동 192-1	답	1,212	1,212	-	공주시	100/100	-	-	-	
10	석장리동 193	답	745	745	-	공주시	100/100	-	-	-	
11	석장리동 194	답	1,095	1,095	-	공주시	100/100	-	-	-	
12	석장리동 195	답	1,663	1,608	-	공주시	100/100	-	-	-	
13	석장리동 196-1	답	1,296	877	-	공주시	100/100	-	-	-	
14	석장리동 196-2	답	1,197	955	-	공주시	100/100	-	-	-	
15	석장리동 196-3	답	235	235	-	공주시	100/100	-	-	-	
16	석장리동 475	하천	391,960	341	-	국 (환경부)	100/100	-	-	-	


#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 공 주 시 장

1. 공인 폐기 및 신조 사유 : 탄천면 제증명 발급 인증기 교체
2. 공인 폐기일 및 신조 공인 최초 사용일 : 2026.3.16.
3. 폐기 공인 내역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탄천면	공주시탄천면장인 제증명발급전용	니트릴고무 2.1×2.1 훈민정음체		

#### 4. 신조 공인 내역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탄천면	공주시탄천면장인 제증명발급전용	우레탄(특수고무) 2.1×2.1 훈민정음체	